

# 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주식회사 팜스코

제정 2015년 3월 27일

# 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## 제1장 총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상법 제 415 조의 2, 제 542 조의 11 및 주식회사 팜스코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정관 제 6 장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-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, 회계 및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  1.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·재산상태 조사
  2.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
  3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
  4.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
  5. 이사의 보고 수령
  6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7. 이사·회사간 소송 및 상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
  8. 감사위원회 대표자 선출권
  9.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·해임에 대한 승인권
  10.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
  11. 기타 회사의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1. 회사내 경영상 중요한 사항
  2.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
  3. 창고, 금고, 장부 및 관계서류, 증빙, 물품 등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조 (의무)

-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, 영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 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위원 및 위원회는 본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(책임)

- ①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전 2 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 항의 책임이 있으며, 그 결의에 참가한 감사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.

###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#### 제 6 조 (구성)

-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4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⑤ 감사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# 제 7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11 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제 11 조에 의한 결의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8 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 9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10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11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2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- 1.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 - 2.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-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1.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 - 2.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 - 3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 - 4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 - 5.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③ 감사에 관한 사항
  - 1. 업무·재산 조사
  - 2. 자회사의 조사
  - 3. 이사의 보고 수령
  - 4.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 - 5.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
  - 6. 감사계획 및 결과
  - 7.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 - 8.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 - 9.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 - 10.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
  - 11. 외부감사인(이하 '감사인'이라 한다) 선임 및 변경·해임에 대한 승인
  - 12.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  - 13.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  - 14.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
## 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7 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#### 제 14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과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3장 보 칙

#### 제 15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 1 인을 둔다.
- ②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# 제 16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